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2024. 2.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637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첫째,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자적 관리 및 보고를 통해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둘째,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셋째,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자적 신고 및 관리로,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을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